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228호 2016. 12. 2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2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변경 고시 -----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재열람 ·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88호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 11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A-1 용도) : 획지분할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A-1	3	13	497.7	2	A-1	3	13-1	248.9	
							13-2	248.8	
소계			497.7		소계			497.7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	13	획지의 분할	획지분할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172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2015.06.01.)로 고시된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산업단지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에 따라 수립(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재활용단지 지정(개발계획)

1. 재활용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방법 : 민간개발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3년 ~ 2016년
 - 변경 : 2013년 ~ 2020년

5. 이하 기타사항(변경없음)

II.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3년 ~ 2016년
 - 변경 : 2013년 ~ 2020년

6. 이하 기타사항(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67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12.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10.(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21보2599 외 15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삼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4)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1	21보2599	그랜저(GRANDEUR)	기타	2016.12.20
2	28투2103	SM518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12.20
3	88더7433	포터 II 이동주유차 (PORTER II)	기타	2016.12.16
4	인천80고3267	프런티어 홈로리	기타	2016.12.16
5	45보8161	아카디아(ARCADIA)	기타	2016.12.14
6	89오4136	포터 II (PORTER II)	기타	2016.12.13
7	인천34도2099	엑센트	기타	2016.12.13
8	경기93구3136	와이드봉고킹캡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2016.12.12
9	31서5349	에쿠스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12.08
10	61머4287	체어맨	기타	2016.12.08
11	57더5839	액티언	기타	2016.11.29
12	38구3592	체어맨	기타	2016.11.29
13	18거9096	아반떼 (AVANTE)	기타	2016.11.25
14	02오3638	에쿠스VL450(EQUUS)	기타	2016.11.25
15	65어4896	BMW 740i	기타	2016.11.25
16	73부5081	스타렉스(STAREX)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11.2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68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재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1073호(2016. 8. 8.)로 열람·공고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계획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재공고 내용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2016년 제4회 서구 도시계획위원회(2016. 9. 1.) 개최 결과 반영에 따른 계획변경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변경내용

구분	당초 공고 · 열람(안)	재공고 · 열람(안)
도로 설치 계획	○ 대로2-32호선 - B=30m→33m, 일부폭원조정(금회변경구간: 161m)	○ 대로2-32호선 - B=30m→33m, 일부폭원조정(금회변경구간: 231m)
	○ 소로1-46호선 - 기·종점: 중로1-26 ~ 대로2-32, L=208m	○ 소로1-46호선 - 기·종점: 중로1-26 ~ 중로3-B, L=185m
	○ 소로1-47호선 - 기·종점: 소로3-354 ~ 대로2-32, L=371m	당초 공고 · 열람(안)과 동일
	○ 변경: 소로1-45 → 중로3-298호선 - 기·종점: 중로1-26 ~ 소로1-47, L=85m	○ 폐지: 소로1-45 ○ 신설: 중로3-A호선 - 기·종점: 중로1-26 ~ 소로1-47, L=85m
	○ 신설: 중로3-299호선 - 기·종점: 소로1-47 ~ 소로1-54, L=179m	○ 신설: 중로3-B호선 - 기·종점: 대로2-32 ~ 소로1-47, L=264m
	○ 신설: 소로1-52호선 - 기·종점: 중로3-298 ~ 교통광장, L=68m	○ 신설: 소로1-52호선 - 기·종점: 중로3-B ~ 교통광장, L=69m
	○ 신설: 소로1-53호선 - 기·종점: 중로3-298 ~ 소로1-46, L=140m	○ 신설: 소로1-53호선 - 기·종점: 소로1-54 ~ 중로3-B, L=79m
○ 신설: 소로1-54호선 - 기·종점: 대로2-32 ~ 교통광장, L=123m	○ 신설: 소로1-54호선 - 기·종점: 대로2-32 ~ 교통광장, L=126m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변 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2	30 ~ 33	주간선도로	8,081	도화동 대로 2-4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11,22, 32호광장	경고제160 (1976.7.8.)	-
변경	대로	2	32	30 ~ 33	주간선도로	8,081 (231)	도화동 대로 2-4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11,22, 32호광장	경고제160 (1976.7.8.)	일부구간 폭원조정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208	중로 1-26	대로 2-32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85	중로 1-26	중로3-B	일반도로	-	-	연장축소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 2-32	일반도로	-	-	도로모퉁이 조정
폐지	소로	1	45	10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 1-47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B	12	국지도로	264	대로 2-32	소로 1-47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2	10	국지도로	69	중로 3-B	교통광장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3	10	국지도로	79	소로 1-54	중로 3-B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26	대로 2-32	교통광장	일반도로	-	-	-

※ ()는 금회 변경구간, 중로 노선번호는 결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32	대로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폭원 확장 (L=231m) 폭원(B) = 30m → 3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중로와의 차량상충방지를 위한 일부구간 완화차로 확보
소로1-46	소로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축소 - 연장(L) = 208m → 185m 중점변경: 대로2-32 → 중로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중점 변경
소로1-47	소로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점부 도로모퉁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점부 도로모퉁이 조정
소로1-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확장에 따른 도로 등급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	중로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폭원(B) = 12m, 연장(L) = 8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기존도로 폭원확장 및 시·중점부 도로모퉁이 조정에 의한 도로신설
-	중로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폭원(B) = 12m, 연장(L) = 26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폭원(B) = 10m, 연장(L) = 6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폭원(B) = 10m, 연장(L) = 7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폭원(B) = 10m, 연장(L) = 12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6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2016.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제1호~3호 서식의 일부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정비
- 재난관리기금 용자대상자의 체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4,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688호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3호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 20퍼센트(청라국제도시는 제외한다)

2016. 1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